

인천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13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19. 12. 17.

판결 선고2020.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인 것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이영림

별지